

2014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2014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2014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사



2014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장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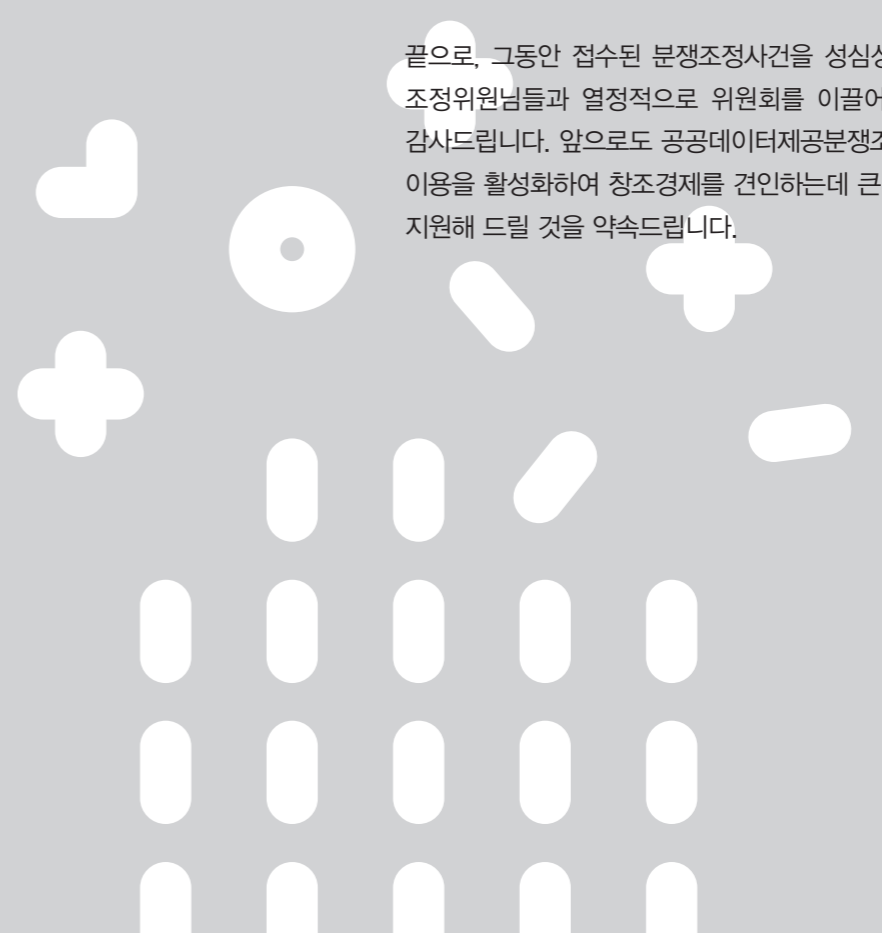
21세기 원유로 손꼽히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시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이전에 비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건수는 약 6배, 다운로드건수는 약 7배 증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약 8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건수가 지금까지 300여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거부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거부결정이 없는지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권 보호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도 마련하여 두고 있는바, 2014년 10월까지 총 13건의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12월에 출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룬 각종 실적들을 정리한 것으로써 다양한 상담 사례 및 분쟁조정사례를 수록하고 있는바, 많은 분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을 성심성의껏 조정하여 주신 여러 조정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유해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2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해영

작년 10월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데이터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 구제 절차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공공기관들로부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통보를 받았을 때에 복잡한 행정소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의 이용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한 전화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및 기업들과 데이터 개방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16건, 데이터 제공 관련 애로사항 등 민원 90여건에 대하여 조정처리 및 민원상담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통보한 약 300여건의 거부 사례에 대해 사전조정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데이터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미확보, 시스템 개편 및 데이터 품질정비의 필요,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 등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정부3.0과 「공공데이터법」이 추구하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생성에서부터 제공·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공거부 사유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접수된 제공거부사례와 전화상담 사례를 분석한 내용, 분쟁신청 들어온 사건에 대한 조정결과를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발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 사례집은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차기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데이터 이용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례집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ontents

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12 1. 설립근거 및 목적
- 13 2. 위원회 구성
- 14 3.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II. 201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조정 현황

- 18 1.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 19 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 19 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 20 나. 데이터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및 거부사유의 유형 분석
 - 21 다.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전 유의사항
- 31 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현황
 - 31 가. 상담 현황
 - 32 나.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III.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사례

- 40 1. 일반적인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51 2.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59 3.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62 4. 분쟁조정절차 관련 상담 사례

IV.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 64 1. 분쟁조정 반려 및 거부 결정 사례
 - 66 가. 분쟁조정 반려 결정 사례
 - 68 나. 분쟁조정 거부 결정 사례
 - 70 다. 분쟁조정 취하 사례
- 70 2. 분쟁조정 완료 사례
 - 72 가. 조정 전 합의 사례
 - 74 나. 분쟁조정 성립 사례

표목차

- 18 [표 1.] 공공데이터 신청건수
- 19 [표 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통보의 기관 분류
- 20 [표 3.] 거부 결정된 데이터 유형 분석
- 21 [표 4.] 거부 결정 사유 유형 분석
- 31 [표 5.]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유형 분석
- 33 [표 6.]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결정의 종류
- 34 [표 7.]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처리 현황

그림목차

- 13 [그림 1.]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14 [그림 2.]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I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01 설립근거 및 목적
- 02 위원회 구성
- 03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01

설립근거 및 목적

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설립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2013년 12월 발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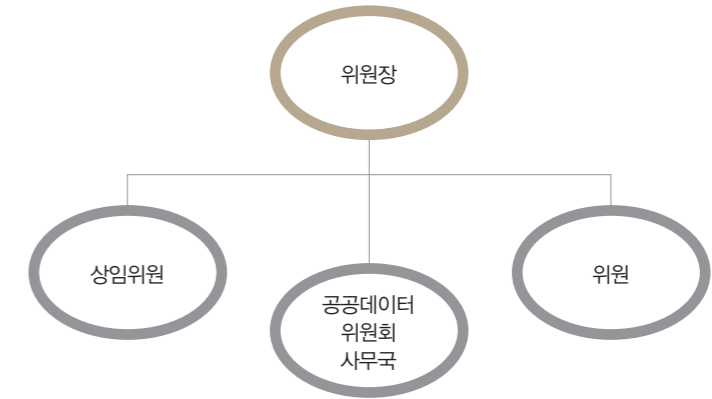
◆ 설립목적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국민의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리 구제
- 전문적·현장 친화적 행정 구제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가능성 제고
-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과 국민의 정보권의 실현

02

위원회 구성

[그림 1.]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교수급 이상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조정위원은 2년 임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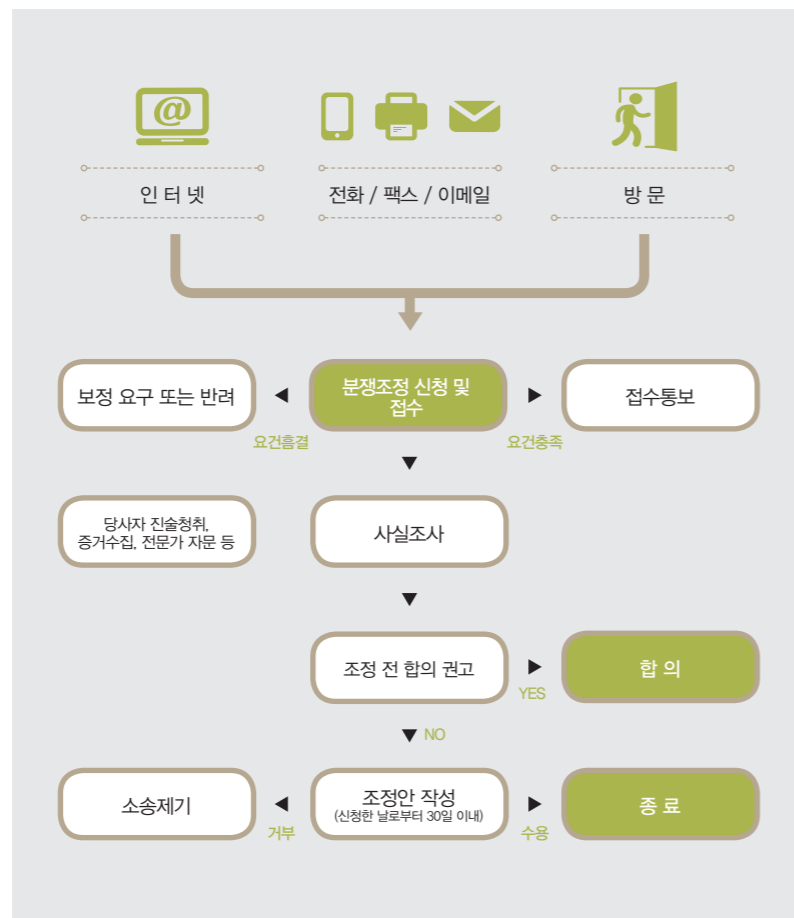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공공데이터 위원회 사무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 설치·운영
 -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 분쟁조정 제도 홍보, 교육, 상담
 -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구축 등

[그림 2.]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에 근거

03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
-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인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 홈페이지(www.odmc.or.kr), 전자우편(odmc@nia.or.kr), FAX(02-2131-0881), 우편·방문 접수
- ※ 조정신청 접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2 신청사실 통보

신청사건 접수 시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3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건담당자가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건 회부

4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 권고
- 당사자 간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5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중한 사건인 경우 조정부 회의 개최
- 신청자·피신청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6 조정의 성립

- 신청인·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 성립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거부로 간주

7 효력의 발생

양 당사자의 조정결정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II

201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조정 현황

- 01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 0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 0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현황

01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II. 201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조정 현황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는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11,255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5,154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에 비해 2.1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포털을 통해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2014년 10월까지 총 80,948건의 제공 신청이 접수되었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포털이나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 신청할 수 있는데, 2014년 10월까지 총 3,893건의 제공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이 시행(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기 전인 2011년도~2013년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공공데이터 신청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오픈API	1,650	2,602	9,815	2,161	1,279	1,564	2,300	1,739	1,585	1,934	1,358	17,825	31,892
데이터	337	2,020	4,108	1,805	2,100			1,758	1,947	3,393	4,770	63,123	69,588
				5,144	4,029	4,445	6,268	18,249	13,120				
				3,919	3,226	4,957	7,070	6,883	5,614	6,379	7,626		
소계	1,987	4,622	13,923	20,054	15,220							80,948	101,480

0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공공기관은 총 3,893건의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외 제공 신청 중에서 264건(기간 : '13.11.01 ~ '14.10.31 약 12개월)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하였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사례들을 기관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부적절한 거부사유로 거부결정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게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현황

기간 : '13.11.01 ~ '14.10.31 (약12개월)

[표 2.]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통보의 기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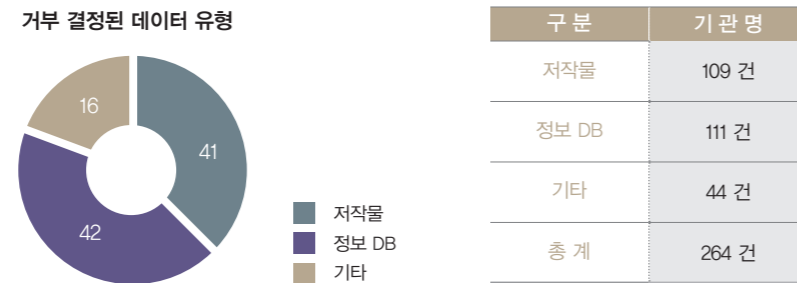
구분	기관명	비고
행정기관 (국가기관 포함) (152)	국토교통부(35), 환경부(19), 경찰청(14), 국립국어원(14), 특허청(11), 보건복지부(11), 국립환경과학원(10), 국세청(5), 문화체육관광부(4), 국립민속박물관(4), 여성가족부(3), 문화재청(2), 산업통상자원부(2), 해양수산부(2), 국가기술표준원(2), 법무부(1), 농촌진흥청(1), 국가기록원(1), 기상청(1), 기상레이더센터(1), 농림축산식품부(1), 국립해양조사원(1), 농림축산검역본부(1), 조달청(1), 국회 예산정책처(1), 산림청(1), 국립습지센터(1), 국회도서관(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1)	총 264건
지방자치 단체 (49)	서울시(24), 광주시(3), 수원시(3), 성남시(2), 파주시(2), 전라북도(2), 경상북도(2), 교육청(서울시)(1), 영광군(1), 서귀포시(1), 부산시 사상구(1), 대전시 대덕구(1), 부산시 북구(1), 서울시 도봉구(1), 춘천시(1), 통영시(1), 서울시 서초구(1), 서울시 중구(1)	
공공기관 (63)	정보통신정책연구원(7), 한국석유공사(6), 한국정보화진흥원(4), 시설관리공단(부천시, 부산시, 대전시, 관악구)(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철도공사(3), 한국저작권위원회(3), 한국교육학술정보원(2), 국사편찬위원회(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2), 한국연구재단(2), 한국농어촌공사(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 한국인터넷진흥원(1), 한국고전번역원(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한국해양과학기술원(1), 한국전력거래소(1), KOTRA(1), 한국지역진흥재단(1), 한국소비자원(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 형사정책연구원(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1), 한국광물자원공사(1), 국립생태원(1), 근로복지공단(1), 한국언론진흥재단(1), 서울농수산식품공사(1)	

264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이하 '거부결정'이라 함) 중 국토교통부가 35건으로 기관들 중 가장 많은 거부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시가 24건, 환경부가 19건의 거부결정을 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다. 위 세 기관의 거부결정을 합하면 총 78건으로 전체 거부결정의 29%를 차지하였다. 이는 위 기관들이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데이터별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및 거부사유의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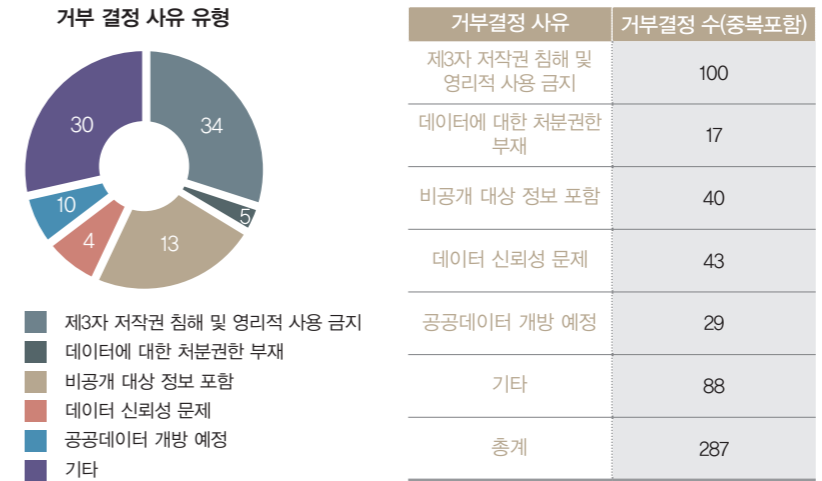
기간 : '13.11.01 ~ '14.10.31 (약12개월)

[표 3.] 거부 결정된 데이터 유형 분석



264건의 거부결정을 데이터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저작물이 109건으로 그 중 41%를 차지하고 있고, 정보 DB가 111건으로 42%, 기타 44건으로 16%인바, 저작물 및 정보 DB가 거부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DB는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결과도 수집되는 정보로써, 도로이정표 DB, 버스 DB 등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이라는 사유로 거부결정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은 기관이 작성한 백서나 연구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제3자 저작권 문제 등의 사유로 거부결정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 거부 결정 사유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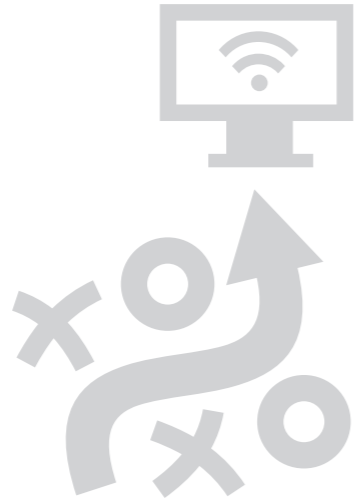
※ 거부 결정 사유는 하나의 거부 결정 내 2~3개의 사유가 복합된 것이 있어, 사유별 총계가 전체 거부 결정 수를 상회함

거부결정 사유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①제3자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 금지, ②데이터에 대한 처분권한의 부재, ③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④데이터 신뢰성 훼손 문제, ⑤공공데이터 개방 예정이다. 이 중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및 영리적 사용 금지라는 사유로한 거부결정이 전체의 34%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거부결정 사유로는 데이터 미보유, 신청(제공)기관의 오인, 중단사유의 발생(시스템 트래픽 과부하), 데이터제공 시 비용 협의 필요, 이용 목적과 신청 데이터의 불합치, 개별 법령에 제공 절차를 특별히 정해놓은 경우 등이 있다.

다.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전 유의사항

「공공데이터법」이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인만큼 제공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제공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바,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거부사유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이 거부결정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① 제3자 저작권의 침해 및 영리적 사용 금지

제3자 저작권의 침해 및 영리적 사용금지는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주된 거부 사유이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저작권에 대하여 오해하고 거부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어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경우 거부결정을 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사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거부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제3자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로만 거부결정을 하기 보다는,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된다는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제공 거부결정 전 점검 사항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

- 기관의 업무상 일환으로써 그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인 경우
 - ☞ 업무상 저작물-저작권자 : 해당 기관(저작권재산권, 저작인격권 모두 기관이 보유)
- 기관이 제3자(연구기관, 타 공공기관 등)와 함께 작성하였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작성한 저작물일 경우
 - ☞ 우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당 저작물의 용역계약서 등 검토)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경우
 - 저작권재산권자 : 해당 기관
 - 저작인격권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만을 양도 받은 경우(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양도받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재산권자 : 해당기관(단,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 저작인격권자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만을 갖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저작권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 계약 상대방(원저작권자)

둘째 저작권 관계 파악 결과 저작권재산권을 기관이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기관이 저작권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전부 양도받거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도록 노력
 - ☞ 제3자로부터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거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한 경우(영리적 이용 허락 포함)
 -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가능
 - 제공 결정을 할 경우 출처 표시 등의 이용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저작물에서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는 부분만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분리 제공이 가능할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부분만 분리하여 부분 제공하여야 하고, 분리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 가능
- 신청인이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가능

• 기관이 타 공공기관 등이나 민간 업체(개인)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례는 “Ⅲ.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사례 Q2-3” 참고

셋째 저작권 관계 파악 결과 저작권을 기관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해주어야 하며,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 이용 금지”라는 이용 조건을 부과하여 제공결정을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정이므로 사실상 제공 거부결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부당한 결정임

• 기관은 제공결정을 할 때에 정당한 이용조건을 부과하여야 함

☞ 이용조건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Ⅲ. 공공데이터 제공 상담사례 Q2-4”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참고 법령>

①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데이터에 대한 처분권한 부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주된 거부사유는 데이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분쟁조정 사례 중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를 수집·입력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에서 데이터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구체적인 사례는 2014-003분쟁조정 사례*참고

! 데이터제공 거부결정 전 점검 사항

- 데이터의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결정 가능. 다만 거부결정을 할 경우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안내해주어야 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해당 데이터의 생성 주체가 개별 행정기관인 경우
 - ☞ 개별 데이터의 처분권한 :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행정기관에게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부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거부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데이터제공 거부결정 전 점검 사항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것

-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로 판단한 근거(법령 등)를 거부사유 작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둘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해당 데이터에서 기술적으로 분리가능한지 검토

- 분리 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부분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④ 데이터 신뢰성 훼손 우려

주로 환경 관련 데이터의 경우 기관들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당수 거부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수정·변형이 가능한 데이터)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제공된 데이터가 훼손 또는 왜곡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추후 변형·가공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면적인 거부결정을 하기 보다는 데이터의 신뢰성 훼손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데이터제공 거부결정 전 점검 사항

- 해당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법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제공결정

☞ 출처표시, 보안각서의 제출 등 데이터 제공결정을 하면서 이용조건 부과가능

- 만약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 등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 가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임을 이유로 제공거부

제공 신청을 받은 데이터가 이미 개방되어 있거나 추후 개발 예정인 시스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이라는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데이터제공 거부결정 전 점검 사항

- 이미 공개된 데이터라면 어디에서 개방·제공하고 있는지 충분한 안내 필요
- 신청인이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OPEN API 등)에는 그러한 서비스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당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다른 거부사유가 없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raw data로는 제공하여야 할 것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1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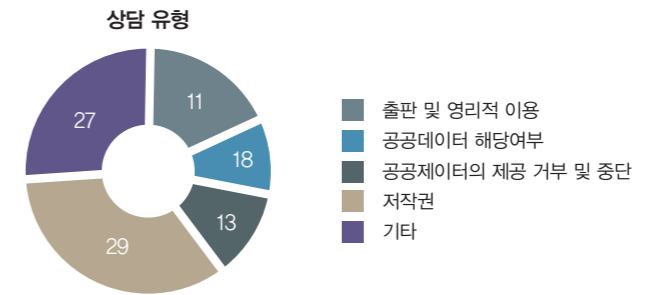
03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현황

가. 상담 현황

기간 : '14.01.01 ~ '14.10.31 (약10개월)

[표 5.]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유형 분석



구분	건수
출판 및 영리적 이용	9
공공데이터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및 중단	11
저작권	24
기타	22
- 수수료(2)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1)	
- 공공서비스 영역(1)	
- 데이터 제공 형태(3)	
- 가이드라인 필요(1)	
- 정보이용계약(1)	
- 데이터 내용 오류(4)	
- 제공방법 문의(4)	
- 공공기관 해당 여부(1)	
- 개인정보(3)	
- 자료 요청(1)	
계	81

201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총 8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81건 중 '저작권'관련 상담이 24건(29%), '공공데이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15건(18%), '공공데이터 제공의 거부 및 중단'이 11건(13%), '출판 및 영리적 이용'이 9건(11%)으로 4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상담'과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공공데이터에 해당 여부에 관한 상담'은 주로 발간물의 경우 문제가 되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중단에 관한 상담'은 주로 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공 거부 및 중단 결정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의였으며, 사전 조정 또는 분쟁조정으로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 및 영리적 이용에 관한 상담 또한 발간물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이었다.

이로써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유형이 저작물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발간물과 관련된 저작물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분쟁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분쟁조정 처리 유형으로는 반려결정, 거부결정, 분쟁조정 신청 취하로 인한 조정 절차 종료, 조정 전 합의 및 조정 성립 등이 있다.

2014년 10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반려결정이 3건, 거부결정이 2건, 신청인 취하가 1건, 조정 전 합의로 해결된 건이 1건,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건이 6건으로 총 13건이다. 그 중 분쟁조정이 성립된 6건은 저작권 침해, 데이터 처분 권한의 부재,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이용조건 및 이용료 부과 등의 사유로 제공 거부된 건에 대한 것이다.

※ 분쟁조정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례 참고

[표 6.]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결정의 종류

구분	내 용	
조정절차 종료	반려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 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합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신청 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위원장이 사건 종결 - 취하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녹취하여 음성 파일로 보관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 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양 당사자가 조정부 회의 전에 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할 경우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 조정 전 합의는 조정부 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이고,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사전조정임
	조정 결정 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이 경우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조정 불성립	조정 결정 수락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음에도 그 안을 어느 한 쪽 당사자만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 종료됨

[표 7.]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처리 현황

사건 번호	조정 접수	피신청인 자료요청 통보	사건조사 보고서작성	조정부 회의	조정안 통보/ 조정수락서 접수	비고
2014-001	14.01.02					14.01.07 반려
2014-002	14.03.07	3.11 / 3.13		3.21 (1차) / 4.03 (2차)	4.08 / 4.09	완료 (조정안 기한 4.18)
2014-003	14.04.01	4.01 / 4.09		4.18 (1차) / 5.07 (2차)	5.09 / 5.12	완료 (조정안 기한 5.14)
2014-004	14.04.05					14.04.09 반려
2014-005	14.04.30					14.05.09 반려
2014-006	14.05.02	5.09 / 5.13	5.16	5.22 (1차) / 5.29 (2차)	6.05 / 6.17	완료 (조정안 기한 6.17)
2014-007	14.05.07	5.09 / 5.13	5.16	5.22	5.30 / 6.16	완료 (조정안 기한 6.18)
2014-008	14.05.09	5.14		5.22 (위원장님 단독조정)	5.30 / 6.17	완료 (조정안 기한 6.20)
2014-009	14.07.10	7.10	7.18		7.25 / 7.28	완료 (조정 전 사전합의)
2014-010	14.08.06	8.8 / 8.18	8.19	8.22 (1차) / 9.12 (2차)	9.12 / 9.16	완료 (조정안 기한 9.19)
2014-011	14.08.06	8.8 / 8.18	8.20	8.22		14.08.25 조정신청취하
2014-012	14.08.28	8.28 / 9.1				14.09.15 거부
2014-013	14.10.07	10.07				14.10.14 거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1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분쟁의 조정)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6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7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3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위원장은 신청인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여 음성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10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의사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 구두 의사표시를 녹취한 음성파일 등으로 한다.

▶ 제17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의 계산에서 신청을 받은 날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조정결정의 형식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명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조정결정 사항
- 4. 조정결정 이유
- 5. 작성연월일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조정결정의 수락기한, 조정의 효력 및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19조(조정 성립)

- ① 조정은 양 당사자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 및 이 조정수락서에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서를 보내 알려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서 송달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조정 불성립)

-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21조(조정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1. 법령상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3.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사례

- 01 일반적인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02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03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 04 분쟁조정절차 관련 상담 사례

Ⅲ.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사례

01

일반적인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Q : 공공데이터는 무엇인가요?

1-1

A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Q :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란 무엇인가요?

1-2

A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조(정의)

②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데이터베이스(DB)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 전자화된 파일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 각 분야의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조(정의)

③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일반 소프트웨어(아래한글, 엑셀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정, 변환 등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 예 : PDF 파일(Adobe Reader) 등.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롭게 못한 대표적인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

Q 1-3

공공데이터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제3자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 제공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해야 하나요?

A

영리적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발간물의 전자파일은 공공데이터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영리적 이용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까지 허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조(기본원칙)

4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4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용요건을 제시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결정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요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긴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조(기본원칙)

4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조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Q 1-5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이 제공 신청 받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내부에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2. 수입인자(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Q 1-6

데이터 판매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A

데이터 판매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데이터를 개방한다면 데이터 판매 업무라는 기관의 본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기준 및 근거가 분명하다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정보이용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계약의 체결 등을 공공데이터의 이용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Q: 1-7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외에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요?

A: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8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데이터 제공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제공 주체는 데이터의 생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이지만, 중앙부처에서 해당 데이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
1-09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 결정을 해주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 거부결정을 한 경우, 저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또는 분쟁조정으로 해결하여 거부결정을 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최근 한 신청인이 서울시 내 25개 구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신청하였는데 2개의 지자체가 거부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정으로 해결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도록 해준 바 있습니다.

Q :
1-10

신청인이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가공·취합 등을 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A :

특정 파일 형태로 가공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들은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바로 거부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선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반드시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원하는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가공되지 않은 raw data라도 원한다고 한다면 raw data로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공 또는 취합 등을 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은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다면 가공 및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라는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적으로 거부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Q:

1-11

공공데이터 제공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이용자가 면책될 수 있나요?

A: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 품질이나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경우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한 권리자(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제36조(면책)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를 제외한다.

※ 데이터 품질이란?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심사보고서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하여 데이터오류율을 언급하고 있는 바, 품질지표로 데이터오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완전성(DB설계의 적정여부), 일관성(데이터변경 시 정합성), 정확성(입력 시 오류방지가능), 유효성(저장 데이터의 기준 준수여부)이 적용됨

02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Q:

2-1

개별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정책용역·연구보고서, 백서, 지침·매뉴얼 등의 간행물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나요?

예시 “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가”기관 명의로 발간·공표한 보고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등록하여 둔 경우

A: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면,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항의 “공공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 후 기관이 완전히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인 경우)여야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저작물의 일부라도 기관의 저작재산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예외 사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발간물의 경우 텍스트의 저자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폰트 라이선스 문제, 책자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조(정의)

-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저작권법 <참고 법령>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Q 2-2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을 해준 이후,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뒤늦게 제3자의 저작권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공중단 결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와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 및 신뢰보호의 문제 등을 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중단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공중단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절차 및 이유제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제공중단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이후 제공중단 결정(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용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절차 및 이유제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제공 중단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2.25. 85누664판결 참조).

▶ 행정절차법 <참고 법령>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참고 법령>

▶ 제22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Q 2-3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합저작물이란 여러 개의 단순저작물을 각각의 단순저작물로 분리 가능한 저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기준은 수 명의 저작권자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결정은 사실상 저작재산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정 공공데이터가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참고 법령>

▶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Q 2-4

공공데이터(정부 발간물)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선,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공공기관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바,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출처표시 문제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기관(저작권자)이 판단하기에 데이터 이용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이용조건으로서 출처표시의 내용 및 범위,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하여 제공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출처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기관명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진의 성명, 저작권을 양도하였거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제3자의 성명), 기관 홈페이지 URL의 표시 등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출판 전 동일성 유지 등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용조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는 특약으로 양도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저작권 양도 외에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결정을 해줄 때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용 조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참고 법령>

▶ 제14조(저작권의 일신전속성)

1 저작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제45조(저작권의 양도)

1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Q 2-5

“공공데이터”에 해당 시, 간행물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저자도 제3자에 포함되나요?** (제3자에 포함된다면 그로부터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작한 보고서가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동법 제35조의 3에 따라 인용된 것이라면, 「공공데이터법」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공정 이용이 가능하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저작권법 <참고 법령>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원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2486)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확산을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공공저작물 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시 및 공공누리 운영 총괄 등
- ※ 담당부서 : 공공사업부 (☎ 02-3153-2872~7), 공공누리 포털 (www.kogl.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안심 콜센터) 한 번의 상담으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 ※ 대표전화 : (☎ 1800-5455)
-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등록 및 권리 변동사항 등록
- ※ 담당부서 : 저작권 등록 (www.cros.or.kr / ☎ 02-2660-0001~005/7)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자로 실명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53조)
-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

-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담당부서 : 심의조정팀 (☎ 02-2660-0104)

03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상담 사례

Q: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공해야 하나요?

3-1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 의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예를 들어 기업이 오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고객명부라든지, 시장조사자료, 판매기법, 원료공급원, 인사 및 조직 관리기법 등의 경영 정보는 경영활동에 있어 유력한 경쟁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정보는 고객명부나 고객별 가격, 사용량, 판매량, 거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바,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대표적인 경영상 정보입니다. 제품정보 역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 비밀이 되는바, 제품분석을 통하여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제품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나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정보라든지, 고객별 제품 정보는 중요한 경영상 정보이고, 특히 원부자재의 정보는 오랜 기간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기술정보를 엿볼 수 있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재정적 정보 등 기타 경영정보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경영상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밀성(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정보성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Q 3-2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문제가 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삭제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면 됩니다.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됩니다.

예시 최근 한 신청인이 해당 공공기관에 지역별 특정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된 보험 청구실적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특정 요양기관과 약품, 업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 제1항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04

분쟁조정절차 관련 상담 사례

Q 4-1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으로 보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반려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아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이어서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위 법률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분쟁의 성질 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으로 다를 문제가 아닙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IV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01 분쟁조정 반려 및 거부 결정 사례

02 분쟁조정 완료 사례

01

분쟁조정 반려 및 거부 결정 사례

사건번호

2014-001



IV.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가. 분쟁조정 반려 결정 사례

① 개요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오해하여,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함.

② 결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절차는 공공데이터포털이나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후 거부결정을 받은 때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임. 본 사건은 신청인이 절차를 착오하여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2014-004



① 개요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유선 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고 유선 상으로 거부결정을 받은 후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결론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여 문서로 거부결정을 받은 후 다시 한 번 분쟁조정 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반려결정함.

사건번호

2014-005



① 개요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결론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결정함.

나. 분쟁조정 거부 결정 사례

사건번호

2014-012



1 개요

신청인은 국내학회를 대상으로 논문투고시스템 보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시 피신청인의 JAMS2.0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컴파일 버전 소스(class)가 아닌 원시파일(java) 소스 데이터 및 로컬에서 테스트 구동을 위한 DDL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결정하자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및 결과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신청인은 애초에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가 아닌 것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의 성질상 조정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결정함.

사건번호

2014-013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유가정보 데이터를 OPEN API형태로 제공 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아직 OPEN API가 개발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결정함. 이에 대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쟁점 및 결과

-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OPEN API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서비스에 이용되는 raw data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청취 결과 OPEN API 서비스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하여서도 데이터 이용 가능하다고 함.
- 신청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가공된 데이터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가공된 형태의 OPEN API서비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어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취득하여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제33조(조정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공공데이터법」 상의 공공데이터의 정의 <참고 법령>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상의 해석
 -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관리지침 고시 2014-13호)
 - 특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공공데이터법 제2조)란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 Excel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포맷)라고 해석(공공데이터관리지침 고시 2014-13호)
- 따라서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란 매체나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그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나 이에 준하는 전자화된 파일 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 제33조(조정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참고 법령>

- ▶ 제2조(조정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번호

2014-011



다. 분쟁조정 취하 사례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간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출판 및 전자책을 제작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용조건 없이 이 사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공받음.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이용하여 출판·상업적 판매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이에 신청인은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받은 그대로 인쇄하였고 가공한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러 데이터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가 훼손된 상태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기 곤란하다. 또한 성명표시와 관련해서도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기관명만 표기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여 출판할 의향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hwp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hwp파일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에 수록된 그래프 9개가 변형, 훼손된 상태로 출판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 내에 기재되어 있던 저자 목록(연구진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피신청기관의 명만 표지에 저자로 기재한 후 출판하였는데, 이는 저자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서 책으로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판매한 건의 회수는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므로, 이미 판매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출판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3 쟁점

가. 이 사건 보고서에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은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의 내부 연구진들이 “공공저작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판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저작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계속 제공하기로 하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받아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피신청인은 ① 저자목록을 명시할 것, ② 출판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검수를 받고 신청인도 확실히 검수한 후 출판할 것, ③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결과

이 사건은 조정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조정취하로 종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원 저자의 표기문제 등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아 신청인이 기관명만 표기하였던 탓에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공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보고서를 인쇄·출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이용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그래프 등 내용 손상이 있었으므로 해당 보고서 중 훼손되어 출판된 것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 분쟁조정 취하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임.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문제의 판단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02

분쟁조정 완료 사례

사건번호

2014-009



가. 조정 전 합의 사례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목적임을 밝히면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제공결정에 따라 위 데이터들을 제공받아서 출판함.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판행위는 피신청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당초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용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결정을 해준 것이므로 계속 출판하기를 원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그 의미에 판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공결정 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이 출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판매중지를 통보한 것이다.

3 쟁점

가.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이후 ‘영리적 이용 중단’을 통보한 경우도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의미를 계속적인 제공상태에 있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번 경우처럼 이용중단을 통보하여 애초의 제공결정 자체를 중단하는 효과를 나타나는 것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결정으로 보아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신청인이 제공받은 공공데이터가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인 경우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이 아닐 경우에는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3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문 연구진 3명, 원고작성 연구진 5명의 외부 연구진이 관련되어 있었음. 자문 연구진 3명의 자문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작성 연구진 5명의 원고는 상당 부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보고서에 수록된 바, 원고 연구진들의 저작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음.

4 결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전 합의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5명의 외부 저작권자들에게 「공공데이터법」과 개정된 「저작권법」의 취지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양도받은 후 신청인에게 행한 이용중단 조치를 취소하는 것으로 조정 전 사전합의로 해결됨.

사건번호

2014-002



나. 분쟁조정 성립 사례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출판할 목적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함.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저작물”이라는 사유로 제공 거부결정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공공데이터라 판단되는 자료(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대상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pdf 형태로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해당 책자 내에 있는 콘텐츠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작성·제작에 참여한 제3자(저작권자)의 허락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3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3 쟁점

가. 해당 발간물의 공공데이터 여부 및 영리적 이용의 가능 여부 (법상의 해석)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로, 피신청인의 발간물 또한 ‘공공데이터’에 해당됨.
- 「공공데이터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사용 금지’를 이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의 발간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의 작성계획안 및 각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만으로는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들에게 개별적 확인이 필요함.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저작물 목록과 범위, 조건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공 가능한 최대한의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확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출처표시 방법 등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대상 저작물은 모두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한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제공이 불가하나,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시대적 조류를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2014-003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의 제공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는 정보임을 이유로 제공 거부결정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도로표지종합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는 도로이정표 정보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web으로 표출되는 내용만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술적 분리작업이나 비용소요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해당정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어 제공을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미지정보와 위치정보만 분리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추출 및 건별 위치정보연계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가공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쟁점

가. 도로이정표 정보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체계

- 구 도로법(2014.1.14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함) 제2조 정의규정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이정표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 두고 있으며, 동 법 제20조에서 각 도로별 관리청을 지정하고 있고, 동 법 제57조에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의무를 관리청에 부여하고 있음.

※ 도로 관리청 : 국도(지선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나. 도로표지판 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사항

- 구 도로법 제6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도로 관리와 관련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구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경우, 도로 표지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행정사항의 위임에 따라 도로이정표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운영함.

다. 행정권한의 정당한 위임인지 여부

- 행정법상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법령(구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에 주어진 행정 권한이 정당하게 위임 된 경우 수임청(지자체장,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정권한을 가짐.

라. 도로표지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 위탁

- 도로표지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도로표지의 관리(특히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표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는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시스템을 통해 웹으로 이정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도로이정표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시·군·구 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수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도로이정표정보의 이용요건(출처표시 등)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추출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신청인은 제공받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소요비용 및 출처표시 등 이용요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중앙부처가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집·입력하는 데이터일 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이 사건의 대상인 도로이정표 정보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다수의 도로관리청이 수집·입력하는 공공데이터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건번호

2014-006



※ 본 사안은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대해 비공개하기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한 app개발 및 각종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데이터 이용료 부과 및 정보이용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고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그러한 제공결정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제공 거부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비용부과 및 이용계약 체결을 이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상 보호되는 신청인의 데이터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데이터의 제공 거부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다수의 정보를 민간에 공개 및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의 유사 기관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유사 기관들은 일부 공개 대상의 정보도 조회 형식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비록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파일로 제공(다운로드 가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의 측면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공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정보이용계약 체결은 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정보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쟁점

가. 조건부 제공(부분제공)이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 권리구제제도인만큼 형식적으로는 제공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거부결정이라고 보여 질 정도의 이용조건이 부과된 제공결정이라면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정보이용계약의 공정성 확보

- 피신청인이 제시한 정보이용계약서에 정의된 정보의 이용방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사전적으로 정의한 “화면 조회방식으로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장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자(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제작한 전용단말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서비스)할 수 있으며, 권한 없이(사전에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다. 이용료 부과 및 산정 기준의 정당성

- 피신청인은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비영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 외에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경우 내부 기준으로써 이용료의 산정 근거 및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데이터 판매 수익으로 운영 되는 기관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데이터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피신청인의 본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제공중단사유)이므로 이용료 산정 근거 및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④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의 이용을 허용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이용계약에 따라서 월 7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 이 외에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인이 조정안에 명시된 위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추가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추가정보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피신청인이 추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 신청인은 위 정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청인 외의 제3자가 권한 없는 재분배(제3자가 다시 임의로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 하는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제3자)의 PC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것을 허용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3자에게 권한 없는 재분배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조정이유

위원회는 조건부 제공(부분 제공)도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우 여타의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데이터 판매 업무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정보이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예방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이용료 부과와 정보이용계약의 체결이라는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

사건번호

2014-007



1 개요

신청인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웹사이트(국내 학술저널, 잡지, 전자책, 동영상 강좌 등을 유·무료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논문 및 저널 등에 대한 메타정보(서명, 제목, 저자 등)에 '참고문헌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자 피신청인에게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 '15년도에 OPEN API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통보를 하여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참고문헌정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고 추출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대상 데이터(학술지 참고문헌정보)는 이미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www.kci.go.kr)을 통해 열람 또는 엑셀 형태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나, 단어입력을 통한 검색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한 번에 전체의 참고문헌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전체 참고문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저장된 DB에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추출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통보 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자체 테스트 해본 결과, 학술지 1종에 포함된 참고문헌정보의 추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즉, 해당 시스템에 등재된 전체 학술지 2,10여종의 전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100종 * 30분 = 63,000분으로 약 4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해당 시스템 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운영 PC의 메모리 용량이 3GB인 점을 감안할 때 운영 PC를 활용하여 전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메모리의 여건 상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에는 KCI 시스템에 구축된 참고문헌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2015년)

③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방법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④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신청인의 엔지니어가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신청인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업무가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를 2015년 3월경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에 있었으나, 그 이전에 신청인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의사는 있었음. 다만, 피신청인 장비의 한계 및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피신청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신청인이 자체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데이터를 추출 것은 가능하다는 것에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으므로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함.

사건번호

2014-008



① 개요

신청인은 의약품의 특정 성분에 대한 보험 청구 실적 정보를 활용한 app 개발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신청에 대하여 해당 성분이 특정 의약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등을 근거로 비공개 정보라는 사유로 제공 거부결정하여 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우선적으로 app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성분인 ***에 대해 피신청인의 약제급여목록을 통하여 ***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이 28개의 제약회사 제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역별 보험 청구 실적 정보를 제공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의약품 청구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특히 제약사의 영업비밀과의 연관이 깊어 단순히 한 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상세분석을 거친 뒤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쟁점

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사건 대상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성분이 등재된 의약품목 수는 28개이나 실제 시군구별로 보험 청구되고 있는 품목 수는 대부분 1~3 품목인바, 이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임.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한 후 신청인이 요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이용료 부과 기능 여부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에 포함된 급여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정보제공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음.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 중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조정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의약품의 특정성분 보험청구 실적정보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공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

또한 피신청인은 본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어 내부규정인 '정보가공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비공개정보 제외 및 데이터 추출 등 가공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함.

사건번호

2014-010



1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S'라 함)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의 해석상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 거부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총 110개 지방자치단체에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108개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제공절차 없이 요청한 데이터를 제공받았고, 그 중 A지자체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결정을 하였으나, 실제 A지자체로부터 그 후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자료제공을 재신청하여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모두 제공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경우 타 지자체와 동일한 운영규정을 근거로 민간인인 개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운영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KLS를 통한 자료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제공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해당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료를 이·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자료의 이·활용 요청을 접수한 운영기관의 장은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활용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민간기관에 대한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제11조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게 되면 보안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위치정보가 드러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것 또한 보안시설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전부에 대해서 제공하기 어렵다.

3 쟁점

가. 운영규정과 「공공데이터법」의 관계 및 운영규정의 내용 해석 검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인 운영규정의 내용 중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최근 「공간정보산업진흥법」도 개정된 바, 공공데이터의 개방 취지에 맞추어 보건대 해당 공공데이터의 경우 민간인인 개인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나. 보안시설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제공 문제

-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관할 구역에는 상당수의 보안시설들이 존재하는바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그러나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보안시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리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술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 외의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참고 법령>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결과

가.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데이터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식(자료제공요청서, 보안각서)을 작성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14일 이내)에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한 후 신청인에게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나.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시설의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자료 제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함.

201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인쇄일 | 2014년 12월

발행일 | 2014년 12월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인 |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장광수

기획편집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최문실(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연구원 정현철(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연구원 변호사 김다희(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민은경(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구지숙(한국정보화진흥원)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 NIA빌딩

전화 | 02-2131-0114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02-333-6555)

※ 본서의 저작권은 한국정보화진흥원·컬러커뮤니케이션즈에게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내 자료실에서
본서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